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4. 3. 21.(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업명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1BL 개발사업(보고)		
신청위치	강서구 가양동 100-1번지 일원		
의결번호	(구조)2024-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 구조설계개요의 오기 정리하기 바람.(공사명, 위치, 용도, 철근재료강도 등)
- 플랫슬래브는 건축구조기준(KDS 14 20 70 4.1.5.4 보가 없는 슬래브의 철근상세) [그림 4.1-1 보가 없는 슬래브]을 참고하여 주열대 상부보강근의 길이가 0.2m 이상이 되는지 검토하기 바람.
- 골조에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를 적용하므로 구조계산서에 내진철근 사용을 명기하고, 어떤 부재에 내진철근을 사용하는지 정리하기 바람.
- 최상층 및 지붕층은 용도 구분하여 설계하중을 작성하기 바람.(일반, 조경, 태양광, 냉각탑 등)
- 지하주차장은 지하3층에 하역장과 재활용처리장이 있으므로 운행하는 차량 종류를 확인하여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 철골보(거더)의 부재설계자료에서 모든 부재의 길이가 $L_x, L_y=3.0m$, $L_b=1.0m$ 로 작성됨. 각 부재의 조건에 맞도록 길이 조정하여 설계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람.
- 지상1,2층 이 기둥의 부호는 지하6, 7층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지상층 기둥에 부호 표기바람.
- 구조평면도 보복도를 계획에 맞춰 정리하고 2층과 3층의 용도를 건축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건축횡단면도[A33-002]과 같이 내부에 높은 콘크리트벽체(램프)가 설치되는지, 1층은 입면이 그 구간 오픈으로 계획된 것인지 등 확인하기 바람.

- 층별 동일 위치의 보 부호가 확인하고 부재설계 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바닥 옥내외 단차 치수확인하기 바람. 역타공법 시 이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하고 전이트러스에 지지되는 Y5열, Y10열 옥외구간 1SG61E부재의 접합부 정리하기 바람.
- 지하2층바닥에서 X11/Y14~15열구간 코아벽체를 지지하는 전이보를 지지하는 거더들은 접합부 단면 고려하여 부재단면 검토하기 바람.
- 기둥 부호가 지하7층 구조평면도에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에서 전이되는 기둥들은 기둥부호를 전이바닥이나 주심도에 표현하기 바람.
- 지진력저항시스템으로 건물골조시스템을 적용하고, 골조에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를 적용으로 구조계획하였으므로 지상층 거더(5G12, 5G13 등)의 스티럽은 내진상세에 맞게 배치하기 바람.
- 기준층 플랫플레이트 응력검토시 적용된 하중조합은 허용응력설계와 극한강도설계 각각의 응력검토 Data를 제시하고 3D모델링에 적용된 횡력에 의한 하중조합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는 A, B, C동 각각 구분하여 작성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에서 고유치해석 결과 중 질량참여율은 방향 (X, Y, RZ)도 함께 표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의 풍하중 및 지진하중 해석 결과가 “구조심의 발표자료” 및 “구조계산서” 와 일치하도록 수정 바람.
- 상시유입량 저감공법 채택과 관련하여 경제성 외에 구조적, 내구적 특성 비교를 통한 선정 근거 제시 바람.
- 굴착시 발생 가능한 인근건물과의 구조 안전성 관련 계측계획 제시 바람.
- ACT 충전 콘크리트의 충전도에 따른 부재이음부의 좌굴 및 채움확인 관련 사항 제시 바람.
- 철근 표기(HD, SHD, UHD) 오기 없도록 전 구조도면 검토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행하기 바람. 끝.

2024. 3. 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